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662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형○○, 김○○
피 고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9,959,480원, 지방교육세 13,711,879원, 농어촌특별세 257,8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변경 전 '○구') B 일원에서 진행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9. 3.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11. 3. 24.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고(2017. 7. 10. 변경인가됨), 2018. 3. 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에 따라 2022. 6. 13. 공동주택 268개호, 상가 9개호를 체비지로 취득하였다(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체비지'라 하고, 위와 같은 취득을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8. 5.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가액 60,094,989,3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감정률 100분의 75¹⁾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7,980,750원(=공동주택 393,916,370원²⁾+상가 24,064,380원), 지방교육세 25,069,310원, 농어촌특별세 1,718,880원 등 합계 444,768,94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12.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최소납부세제³⁾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178,021,270원(=공동주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제3호

2) 각주 1)의 경감률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감률을 중복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제177조의2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지방세특



택 157,566,540원⁴⁾+상가 20,454,730원), 지방교육세 11,357,340원, 농어촌특별세 1,461,050원만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정정결정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중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는 정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정정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및 위 개정 이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들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만 하고, 도시개발사업과 합하여 '재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감률을 중복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기준으로 한 감액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 1. 1.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등의 시행으로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규정은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완전 면제를 유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정한 것은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이 사건 거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0. 1. 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0. 1. 1. 이후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정하여야 한다. 위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그와 같이 면제받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율 85%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②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74조 제1항에서 위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제177조의2를 신설하여 본문에서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를 정하였다. 위 법률 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에서 85%만 감면되는 것으로 개발사업 등 시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나, 20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단서에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제74조에 따른 감면율



포함함으로써 2019. 12. 31.까지는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완전히 감면하여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신뢰를 보호하였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은 제177조의 2 단서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74조에 따른 감면을 삭제하였으나, 부칙 제5조에서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제2항 : 2020년 1월 1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되, 그 적용을 2019. 12. 31.까지 유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하였고, 이러한 취지는 이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에도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체비지를 2019.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④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하여 기존 제74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과 함께 정하였던 것을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하여는 제74조 제3항에 정하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2022. 12. 31.까지 75%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였다⁵⁾. 이 경우 앞서 본 2020. 1. 1.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85%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재개발사업 등 시

5) 그 외에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등에 관한 기존의 취득세 경감은 경감률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여 한시적으로 유지하였고(제74조 제5항),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폐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경을 신설하는 등(제74조 제4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행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칙 제17조 제1항을 통해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2019. 12. 31.까지 체지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전히 감면된다는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신뢰를 보호하였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경우 2022. 1. 1.부터 다시금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2021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라 한다),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취득세가 면제된 자에게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 1. 이후에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과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 85%의 감면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것은 2014년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경우와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의 경우를 같은 조 제3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만 경감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특례를 폐지한 것은 감면대상사업을 구분하고 감면주체와 대상사업별로 담세력과 수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려는 것인데, 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분을 전제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위 법의 시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부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다시 완전히 감면하려고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2021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관하여만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 점에 비추어 2020. 1. 1. 이후 재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됨이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0. 18. 선고 2022누1291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제177조의2 단서에 제81조의 경우를 포함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제177조의2 단서에서 제81조가 삭제되어 제81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게 된 사안이다. 위 사안은 부칙에서 제81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재산세가 전부 감면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부칙에서 제74조 제1항에 대해 경과규정을 둔 이 사



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제1항·제2항: 2020년 1월 1일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한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끝.